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근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 2천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나올 정도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에 대한 실적평가와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실적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